

도시형 재난과 문화적 저항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안티-젠트리피케이션 운동을 중심으로

Urban Disaster and Cultural Resistance: Anti-Gentrification Movements
of Takeout Drawing in Hannam, Seoul

김지윤*·이선영**

최근 상가임대차 문제로 서울 곳곳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최전선에서 한남동의 카페이자 문화공간인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상가임대차문제를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사회적 재난으로 공론화했으며, 문화적으로 저항함으로써 재난을 알리고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본 연구는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안티-젠트리피케이션 운동을 통해 도시형 재난의 물리적·심리적·사회적 측면을 살펴보고, 재난에 저항했던 다양한 방식과 그 저항의 가능성 및 한계를 고찰해보았다. 기존의 점거 중심의 안티 젠트리피케이션 운동에 비해 테이크아웃드로잉의 문화적 저항은 '내 물림'의 공적 맥락을 강조하고 도시형 재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공간을 다양한 문화적 활동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재산권은 물론 임차인의 사용가치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의 계기를 제공했다.

주요어: 도시형 재난, 문화적 저항, 젠트리피케이션, 테이크아웃드로잉, 위험

1. 서론

2015년 서울, 한남동에서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재난을 만났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전염병과 같고, 온 마을과 도시를 덮고 있으며 가게를 운영

* 제1저자,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공동연구원(g0700786@u.nus.edu)

** 교신저자, 킹스칼리지런던 공동연구원(seon_young.lee@kcl.ac.uk)

하는 억울한 이웃들의 눈동자는 서러움으로 가득 찹니다. ‘내몰림’을 당하는 저희 같은 처지의 시민들의 마음에 한을 품게 하는 도시에 살면서, 국가로부터 정책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마음이 울렁거립니다. (중략) 저희가 처한 상황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의 재난입니다. ‘재난의 공공성’을 발견합니다(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디렉터, “공간을 찾아주시는 손님, 이웃들, 예술가분들께 상황 공지 드립니다”, 출처: 테이크아웃드로잉 홈페이지, 2015년 09월 23일).

2006년 10월 강남구 삼성동에 카페이자 전시공간으로서 문을 연 테이크아웃드로잉(이하 드로잉)은 이후 성북동과 대학로를 거쳐 2010년 현재 위치인 용산구 한남동 683-19번지 건물의 두 개 층을 임차해서 카페와 예술가들이 작품활동과 전시를 할 수 있는 레지던시(residency) 기능을 결합한 ‘카페 레지던시(cafe residency)’ 공간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운영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한 기업이 이전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고 다시 1년 4개월만인 2012년 2월에 싸이가 이 건물을 매입한다. 문제는 이전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드로잉과의 임대차 계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했고 판사의 조정안으로 2년간 더 영업을 연장해주는 데 드로잉이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전 건물주는 단기간 수십억의 차익을 얻으며 현 건물주에게 건물을 매매한 것이다.

현 건물주인 싸이는 이 조정안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반면, 거짓 재건축을 근거로 한 조정안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임차인인 드로잉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에 새로운 건물주는 2014년 11월 프랜차이즈 카페에 임대하기 위해 드로잉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자 2015년 3월 이들을 내쫓기 위한 명도집행을 시도한 이래 4월, 9월에 연이어 철거 용역을 고용해 1년여에 걸쳐 총 세 차례의 명도집행을 시도하면서 용역들과 임차인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양측 간에는 임대차 계약과 명도집행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소송전이 이어졌다. 건물주는 공간에 대한 합법적 소유권을 주장하며 임차인을 ‘연예인 건물

주'의 명예를 이용해 부당한 또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이들로, 임차인인 드로잉은 건물주를 재건축 혹은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임차인을 부당하게 내쫓고 그 과정에서 철거용역과 그 대리인인 변호사가 각각 폭력 행위를 자행하고 비인격적 언사를 내뱉으며 인권을 유린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해 임차인인 드로잉 운영진은 서두에서 인용한 것처럼 폭력적인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과 공간적 점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파괴된 일상성과 정신적 피해를 '재난'이라고 선언했다(테이크아웃드로잉, 2016).

이처럼 최근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라 불리는 임대료 상승이 일어나면서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권리금 및 투자금 그리고 임대기간의 정당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내몰리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강제철거와 원주민의 퇴거 현상, 즉 주거지 중심의 젠트리피케이션과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과거 도시 빈민의 주거 문제나 계급투쟁의 문제처럼 심각한 도시 문제라기보다는 개인들 간의 사적인 재산 분쟁이나 갈등으로 언론에 비취지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드로잉 사태를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공간이용의 극대화, 투기적 공간의 매매, 타자의 불행에 대한 무관심, 위협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미비한 대비, 계층이나 계급 차이에 의한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의한 도시형 재난의 한 사례로서 다루고자 한다. 이는 2005년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일으킨 피해조차 순수한 자연재해가 아닌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원인에 의한 재난임을 지적한 학자들의 견해처럼(Gregory and Hartman, 2006; Smith, 2006), 재난의 성격이 점점 더 사회구조적 원인에 따른 것임이 강조되고, 또한 그 공간적 차원에서 도시라는 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Pelling, 2012)하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또한 재난이 참혹한 피해만을 양산하는 부정적 사건이 아닌 이타주의와 새로운 시민적 참여의 열망이 발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재난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Solnit(2009)의 주장 역시 드로잉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새로운 저항의 형태를 보는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다. 언론이

드로잉 사태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지만 재난 속에서 탄생한 수많은 이들의 연대와 그들이 만들어 나간 문화예술행사, 그것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¹⁾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테이크아웃드로잉 사태를 통해 도시형 재난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물리적·심리적 피해의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고, 재난에 저항했던 다양한 방식과 그 저항의 가능성 및 한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난의 발단이었던 2015년 3월 첫 강제집행 때부터 드로잉이 문을 닫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드로잉에서 진행된 각종 문화예술행사 자료와 드로잉 사태를 보도한 언론자료를 수집·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년여간 현장 연구를 통해 수집한 1차 자료를 추가해 2차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필자들은 2015년부터 드로잉에서 진행된 각종 포럼 및 워크숍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기록을 남겨왔다. 2016년 1월 드로잉 운영진이 예술가, 기자, 문화 활동가, 연구자들과 함께 구성한 <재난연구소>에 처음부터 관여했으며,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들은 드로잉을 공간적 기반을 두고 진행된 여러 문화예술행사와 사건을 관찰하고, 참여자들 및 기획자들과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론에 이어 2절에서는 도시의 주거 혹은 경제활동의 공간에서 내몰리는 주민이나 임차인의 사례를 한국 도시형 재난으로 정의하면서 위험사회론 또는 재난 사회론 관련 논의들을 간략히 살펴본다. 3절에서는 한국 도시형 재난의 사례들 가운데 드로잉 사례와 유사한 자본주의적 개발로 인해 공간의 점유권을 박탈당하고 이에 저항했던 사례들을 검토한다. 4절에서는 드로잉 사례가 보여준 재난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물리적·심리적 피해의 사회적 측면 그리고 잠재적 위험 혹은 이미 발생한 재난에 저항했던 다양한 방식들의 공간적 측면과 그 함의들에 대해 살펴본 후 그 저항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

1) 이선영·한운애(2016)는 드로잉에서 이뤄진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정리하고 이를 문화예술행동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유일한 학문적 연구다.

서 결론을 맺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2. 도시형 위험과 재난

Ulrich Beck에 의하면 ‘위험’이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재난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래 가능성으로서의 ‘위험’이 현실화되는 사건이 ‘재난(disaster)’이다(문강형준, 2012: 22). Beck(1997: 44)이 새로운 유형의 사회-정치 동학을 지닌 초국가적이며 비계급적인 지구적 위험을 정의하면서 2차 대전 이후 현대사회는 그 이전의 근대사회 그리고 산업사회와는 다른 방식의 위험사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위험은 특정 지역이나 사회적 집단에 한정되지 않으며, 기후변화나 자원고갈과 같은 생태학적 위험에서부터 원전사고나 생명공학에 의한 사회적 위험에 이르기까지 단일국가나 사회적 집단이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인류라면 그 누구든 그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초국가적이며 또한 특정 계급만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기에 비계급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위험의 초국가성과 비계급적 특성은 이후 지속적으로 도전받아 왔다. 우선 위험의 초국가성은 지구적 수준의 위험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글로벌-로컬’의 이분법에 따라 마치 지구적 규모에서 작동하는 글로벌 위험이 로컬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향 구조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황진태, 2016: 287). 또한 사회적 위험집단에 대해서 Beck이 언급한 ‘부메랑 효과’는 초기에는 위험에 더 취약한 집단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엔 그 위험을 생산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집단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위험이 재난으로 현실화되었을 때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글로벌 수준의 재난은 그 피해가 누구에게든 동등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는 더 나아가 위험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이나 빈민층에 대해 “세련된 거리두기”(문강형준, 2012: 24)를 할 수 있었던 중산층의 우아한 냉소주의도

불가능해지며 ‘우리’와 ‘타자’ 간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라는 논의로 나아간다. Beck의 주장처럼 글로벌 위험에 의한 재난들은 기존 산업사회의 위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열었지만 로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은 글로벌 위험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사회구조적 모순 속에서 더욱 심화되거나 계급, 인종 등 다양한 사회적 그룹에 차별적 효과를 가져오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적 맥락이 만들어낸 위험과 그것이 실현된 재난은 실은 글로벌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위기를 복합적으로 반영하거나 이를 내재하고 있다.

이는 위험의 원인이 자연재해일 경우에도 그 재난의 사회적 효과를 반추해볼 때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재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2005년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한 뉴올리언스 지역이 겪은 재난은 재난 자체는 물론 그 전후의 대비와 복구 과정을 중심으로 비판적 지식인들이 그 재난의 사회구조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면서 순수한 자연적 재해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했다.²⁾ 카트리나가 닥쳤을 때 공적 도움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상류층은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자동차라는 이동수단, 대피할 수 있는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신용카드, 그리고 재난 극복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 등 여러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은—특히 이중 상당수가 흑인이었는데—자가용이나 신용카드 등 이동 및 소비 수단이 없었기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고립되었고 생존을 위한 생필품 확보의 행위는 약탈로 그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 따라 나타난 재난에 대해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정치적 개입은 그 재난이 자연적 현상일 뿐이라며 전문가적 견해를 빌려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강조한 비판을 덜

2) 웹사이트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카트리나 이해하기(Understanding Katrina: Perspectives from the Social Sciences)”, <http://understandingkatrina.ssrc.org>에서 다양한 사회학자 및 인류학자들이 카트리나에 의한 재난을 분석한 글을 볼 수 있다.

어버리는 효과를 갖는다. 이로 인해, 비슷한 유형의 위협에 대한 대비와 대책은 미뤄지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계층 또는 특정 인종 그룹의 재난에 대한 취약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적 모순이 계속된다.

이러한 계층적·인종적 차이에 의한 불평등 외에 재난에 대한 자본주의적 시장 원칙의 폐해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카트리나 재난의 피해가 극대화된 것은 자본주의적 시장 원칙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Smith, 2006). 우선 글로벌 온난화를 예방하는 조처들을 거부한 당시 정부는 위협의 예방보다는 석유와 에너지 회사들의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였다. 또한 당시 정부는 카트리나에 의한 위협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습지대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자연적인 보호 기능을 무화시켰다. 거버넌스의 측면에서도 뉴올리언스 주민들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계급과 인종에 기반을 둔 ‘가난한 계층’에 대한 포기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해체를 가속화시킨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재난의 크기를 더욱 키웠다. 이상의 논의에서 언뜻 자연재해로 보이는 카트리나에 의한 재난은 결코 순수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아닌 인종 및 계급에 대한 불평등적 사회구조에 기인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Gregory and Hartman, 2006; Smith, 2006; Solnit, 2009).

이런 측면에서 재난의 사회구조적 특성과 관련해서 왜 특정 계층이나 사회적 집단이 특정 공간에서 다른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계층이나 사회적 집단보다 재난의 피해자가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도시형 재난과 관련해 재난에 대응하는 도시의 취약성에 대한 연구에서, Pelling(2012)은 재난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만큼이나 도시화가 재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도시의 자본주의적 시스템과 개발이 만들어내는 재난의 효과에 주목한다. 가령 동일한 자연재해가 도시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도시에서는 도시 전체의 교통을 마비시켜 대중교통 없이는 고립되는 저소득 계층에게 더 큰 재난피해를 입히는 반면 어떤 도시에서는 국부적인 피해

에 그쳐 전체 도시의 마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흔히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의 피해는 도시 빈민이나 이주노동자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들에게서 가장 절망적인 수준으로 나타난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순수한 자연환경과 인간이 조성한 건조 환경 간의 구분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재난 전후의 예방 및 복구와 관련된 재난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점점 자연과 인공적 요소의 구분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Pelling(2012)은 재난의 개념화를 폭넓게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주기적 자연재해는 물론 일상적 위협에 뿌리를 둔 만성적인 위험 등도 재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저소득계층이나 특정 인종 집단을 각종 재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내부로 가져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는 정책적 결함 등도 사회적 재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Pelling(2012)은 재난 자체의 개념을 확장시키면서도 재난이 도시 공간 내에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된 형태로 드러나며 따라서 재난의 극복도 공간적으로 집중된 사회적 그룹이나 계급적 동일성에 기반을 둔 사례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난의 원인이 도시 시스템이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이나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 혹은 원전사고와 같이 공간적 단일성이 여전히 유효한 사례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도시 특유의 정치·경제·사회적 구조에 기인한 재난의 유형들은 다루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가령 한국의 재개발 방식에 의한 오래된 주택지의 파괴와 철거민 발생에 의한 문제는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Pelling의 분석틀로도 도시형 재난으로 분석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상가임대차문제에 의한 상가세입자들의 내몰림 문제는 공간적으로 매우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발생하고 있기에 그 집단적 성격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도시에서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내몰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내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맞물려 자본이 메가 프로젝트나 과거 합동재개발과 같은 큰 규모의 재개발의 수익성이

떨어짐에 따라 소자본 형태의 도심재활성화에 유입되는 등 거시적 경제 구조와 연계되어 도시라는 공간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형 재난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도시의 물리적 시스템(교통 및 통신 등의 기반시설, 각종 재해 시설, 주택 및 주거 환경 등)은 물론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 및 제도 등 비물리적인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특정 계층·젠더·인종 등에 대해 불평등하게 작동함으로써 일상적 삶의 영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는 사회구조적 원인이 발견되었을 때, 이러한 피해의 집단적 발생을 도시형 재난으로 보려고 한다. 다음 절에서 보겠지만 과거 재개발 방식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원주민의 내몰림을 발생시켰던 재난의 원인 중 하나인 소유권 중심의 계층별 차별구조가 반영되었던 관련 법률 및 사회적 인식이 현재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면서 상가임차인에게도 유사한 재난을 유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로잉 사태를 단순히 도시형 재난으로 정의하는 것을 넘어 이 글에서는 서두에서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재난의 발생 과정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이들의 활동이 이타주의와 새로운 시민적 참여의 계기(Solnit, 2009)가 되는 저항의 과정에 주목하려 한다. 드로잉의 저항은 소유권 없는 공간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이윤 창출을 위해 구성된 ‘추상 공간’보다는 실제 사용과 필요의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체험된 공간’(김선필, 2014)으로서 그 공간의 사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공간적 실천들(spatial practices)³⁾이 행해졌던 장소였다. 이러한 실천이 가능했던 것은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그 공간을 단순히 상업적 공간이 아닌 저항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던 드로잉의 임차인들이 실천했던 ‘환대(hospitality)’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저항의 공간적 실천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3) 체험된 공간, 공간적 실천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르페브르의 공간에 대한 이론에 기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영민(1997), 노대명(2000), 로브셀즈·조명래(2000)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루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 재난의 정의와 그 재난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화적 저항에 대한 사례로서 드로잉의 사례를 다루려 한다.

3. 도시형 재난과 내몰림

재난이라는 용어를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 언제 사용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2015년 4월~5월 사이에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세월호 1주기여서 재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적인 사태나 절박함 등이 이런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재난’으로 인식되고 재난, 망명 등의 용어가 이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 같다(드로잉 레지던시 작가와의 인터뷰, 2016년 7월).

서론에서 밝혔듯이 드로잉 사태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공간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의 도시 발달과정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 1970년대 이래 불법 주거단지 철거에서부터 2000년대 뉴타운 재개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대규모 철거와 강제 퇴거를 경험했다. 1970년대 광주 대단지 사건으로 대변되듯 도시의 확장개발로 인해 도심 곳곳의 빈민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며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뿌리 뽑혔지만, 거대한 정부에 맞서 조직적으로 퇴거를 막아내 기란 역부족이었다.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강제퇴거에 대한 저항이 1980년대 합동재개발이 도입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조직화되었다(Kim, 1998). 그러나 과거 1970년대와 달리 불법 점유한 집주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위가 인정되었기에 1980년대 강제 퇴거와 철거 반대운동은 세입자 철거 반대운동이 되면서 ‘세입자 대 가옥주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조합’이라는 이해 집단 간의 갈등 프레임을 만들어내며 국가와 정부는 책

임 소재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황인철·유남영, 1989). 1980년대 세입자 운동은 1970년대 생존권에 집중한 불법 점유자들의 철거 반대 운동과는 차별화된다. 세입자들은 재개발의 불공평함과 사회 부정의를 인지하기 시작했고 정당한 법 집행과 주거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민주화 운동세력과 종교 세력의 지지를 받았다(Kim, 1998). 재개발에 반대하며 철거 반대와 보상을 넘어서 사회 보장제도와 지불 가능한 주택 부족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책임을 요구하며 세입자·철거민 중심의 단체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운동을 전개했다. 이는 주거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세입자를 위한 보상제도가 도입되고 재개발지역 내 임대 주택 공급이 시작되었다(Ha, 2002). 그러나 1990년대 신도시 개발에 따라 철거민의 저항은 지속되었고 전체 시민들의 주거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한 결과 2003년 주거 기준에 대한 법률이 도입되었다(박인권·이선영, 2012). 2000년대 뉴타운 재개발사업에서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달리 중시되어 온 가옥주의 재산권도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집주인조차 자신의 집을 내놓고 세입자와 함께 삶의 터전을 떠나 뉴타운 난민으로 전락하면서 사회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반복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도시재개발에 따른 강제 철거와 퇴거의 문제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재난의 정의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적 문제에 기원한 재난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특정 집단에게 일어나는 문제로 축소되어왔다. 그뿐 아니라 재개발이 야기하는 삶의 변화와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비단 주거권에 한정되지 않고 용산 참사와 두리반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한 지역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재개발로 인해 생업수단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상인의 문제는 주거문제에 가려 충분히 조명을 받지 못했다. 도시재구조화 정책에 따른 재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상인의 문제와 함께, ‘강남 라떼킹’(《경향신문》 2015.02.17), ‘가로수길 우장창창’(《한겨레》 2016.07.18)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몇 년간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이 안고 있는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세입자의 장사할 권리와 건물주의 재산권이 대립·분쟁하며 사회 쟁점화되고 있다.

과거 주거권 운동 당시 주거 세입자들이 그랬듯이 상가 세입자들은 2013년 그들의 최초 연합체인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을 조직해서 분쟁 현장에 연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뉴얼⁴⁾을 만들었다. 지난 3년간 적극적으로 상가세입자 문제를 공론화시킨 결과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인 경우 연 9% 이하의 임대료 상승, 환산보증금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이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권리금법제화 등이 포함된 상가법 개정을 이뤄냈다. 그러나 서울 지역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간은 2.7년인데 반해 평균 현계약 기간이 2년으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환산보증금 4억 원 초과인 경우가 약 1/4에 해당하는 현실에서(한국감정원, 2015), 환산보증금 제한규정을 비롯한 상가세입자에 불리한 상가법을 개정하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다(《오마이뉴스》 2016.07.21). 이와 같은 상가 세입자들의 노력에도 상가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나 기간은 제한적인 탓에 소위 ‘뜨는 동네’의 상가 세입자들은 상가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동네의 유명세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가 되어 여전히 생업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다. 드로잉은 상가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음과 동시에 한남동의 젠트리피케이션 영향권 내에 있는 자신들의 문제가 동시대 여러 현장과 연결되어있음을 자각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재난으로 접근해야함을 강조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재개발로 대표되는 한국 주거 젠트리피케이션과 상가법 문제로 압축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도시개발의 결과물이다(이선영, 2016: 228). 한국의 도시는 도시의 주거 및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간을 하나의 상품으로, 도시의 교환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도시에 대한 사용가치와 공

4) 골목사장과 변호사가 함께 쓴 『골목사장 생존법』(김남균·김남주, 2015)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일어나는 분쟁을 사례별로 정리하고 관련 법률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공성은 희생되었다. 개발을 둘러싼 상반된 입장을 가진 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의견수렴 및 조율보다는 재산권 또는 개발권이 중시되면서 개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해 대규모의 비자발적 이주와 강제 철거가 반복되어왔다(Shin and Kim, 2016). 한국 도시화과정에 내재되어 있던 상업적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공간적 불평등과 부정을 사회 문제화하고 저항하는 운동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지만, 이를 ‘재난’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다음 4절에서 한국의 투기적 도시성의 집약체인 젠트리피케이션을 재난으로 처음 명명한 드로잉 사태와 드로잉의 안티-젠트리피케이션 실천⁵⁾을 살펴봄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새로운 저항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도시연구와 위험연구 간의 새로운 소통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4. 테이크아웃드로잉의 문화적 저항과 한계

1) 공간의 성격과 저항의 형태들

드로잉은 상업적 공간으로서의 카페와 그 상업적 이윤의 일부를 현대 미술 작가들에게 지원함과 동시에 카페라는 공간 자체를 그들의 작업공간이자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카페 레지던시(cafe residency) 모델을 2006년 카페 초기부터 도입해왔다. 이는 기존의 전문 갤러리와 달리 ‘허름한 건물을 개조한 장소가 풍기는 독특한 분위기’(신현준, 2016: 41)를 내세우

5) 드로잉 사태에 함께한 수많은 예술가의 활동과 더불어 사건의 당사자들도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알리고 그 해결과정에서 얻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문화적 실천방식을 도모하였는데, 그 예가 바로 분쟁 당시에 출판된 『한남포럼』(테이크아웃드로잉, 2016a)과 최종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출판된 『드로잉 괴물 정령』(테이크아웃드로잉, 2016b)이다. 이는 당사자들이 분쟁의 한가운데에서 월간디자인(2015)과 인터뷰하며 밝힌 그들의 지향점(임차인에게 불리한 현행법과 저항의 실패 가능성이 큰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이 진화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 표 1 > 테이크아웃드로잉 사건 및 문화 활동 일지

| 기간 | 내용 |
|------------|--|
| 2010.05.22 | 한남동에 테이크아웃드로잉 오픈 |
| 2012.02.23 | 가수 싸이가 건물 매입 |
| 2014.11 | 싸이가 테이크아웃드로잉에 명도소송 제기 |
| 2015.03.06 | 첫 번째 강제집행 |
| 2015.04.21 | 2015.05.28 테이크아웃드로잉 사태를 위한 공연 <싸이트> |
| 2015.04.22 | 두 번째 강제집행 |
| 2015.05.11 | 1회 한남포럼 <환대의 공간 그리고 여정> |
| 2015.07.28 | 2회 한남포럼 <밤의 카페> |
| 2015.09.21 | 세 번째 강제집행 |
| 2015.10.18 | 3회 한남포럼 <재난의 공공성: 위기의 순간엔 축제를> |
| 2015.11.01 | 2015.12.31 대망명(大亡命:The Great Asylum)-언더그라운드 음악가들(자립음악생산조합 중심)의 공연 및 작업 공간으로서 테이크아웃드로잉 |
| 2015.12.09 | 4회 한남포럼 <우리의 망명지는 어디인가? > |
| 2015.12.14 | 5회 긴급 한남포럼 <젠트리피케이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 2016.01.01 | 2016.02.29 다양한 예술가들의 레지던시 공간으로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레지던시(Residency for Everyone)> 프로그램 |
| 2016.01.12 | 재난연구소 발족 |
| 2016.02.02 | 6회 한남포럼 <용산, 왜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뜨거운 장소인가?> |
| 2016.02.02 | MBC PD 수첩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에서 테이크아웃드로잉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룸 |
| 2016.04.06 | 건물주 싸이와 테이크아웃드로잉 최종 합의 |
| 2016.05.01 | 2016.07.31 재난연구소 레지던시 |
| | 2016.08.31 합의에 의해 2016년 8월 31일까지 테이크아웃드로잉 영업 |

는 곳으로 일반 소비자에게는 영화에 등장한 ‘트렌디한’ 카페로 인식되기도 했다. 드로잉이 2006년 삼성동과 2008년 성북동을 거쳐 2010년 한남동으로 이전할 당시 이곳이 들어선 이태원대로는 대부분 근린생활시

설로 분류되는 건물들의 소유권 변화가 가장 활발한 시기로 소위 ‘뜨는 동네’로서 기존의 일반 음식점들 자리에 기업들의 플래그십 스토어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나 소비문화 공간 등이 들어서기 시작할 무렵이었다(김지윤, 2016). 드로잉이 일반 음식점이었던 건물의 두 개 층을 전혀 다른 성격의 카페로 개조하고 영업을 시작한지 2년이 되지 않아 두 번이나 건물주가 바뀌면서 불안정한 임차인의 지위로 내몰리게 되었다. 여러 차례의 명도집행 과정에서 임차인으로서 일단 퇴거당할 경우 공간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박탈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공간 점유와 점유의 정당성을 위한 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했다(<표 1> 참조).

이러한 점유의 전략은 이미 유럽 여러 국가에서 ‘스퀴팅’(squatting)’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공간에 대한 점유 권리가 소유권에 우선함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에서의 스퀴팅은 비어 있는 공간에 집주인이거나 건물주의 동의 없이 특정 기간 거주할 경우 점유하는 이들에 대한 사용가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초기의 ‘불법적 점거’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Pruijt, 2013). 반면, 드로잉은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한 점유가 아닌 사용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서 공간 점유에 대한 합법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공간 점유이다. 이에 대한 강제 집행 역시 합법성에 근거하고 있으나, 그 실행방식의 폭력성과 종종 공권력의 호혜적 방관을 활용하며 위법성에 기댄 집행방식이 일반화되어

6) 도시에서의 스퀴팅(urban squatting)은 사회 운동으로서 비어 있는 건물을 하나의 기회로 새롭게 보게 하고 이러한 빌딩을 점유하기 위한 집단적인 협력을 상상 가능하게 한다. 유럽 도시에서 스퀴팅은 1960년대 시작되었지만 그 이전인 2차 대전 직후에도 큰 규모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그 목적은 경제적 자원의 재분배, 주택부족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 지배적인 기능주의적 도시 계획에 대항하기 위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주장을 실천하기 위한 운동, 유토피안적인 투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다른 주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산층에 대한 반문화의 표현, DIY 문화의 재현, 좌파자유주의적 운동의 일환, 포스트모던 운동, 극단주의적 삶의 방식을 강조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 자세한 사례들은 Pruijt(2013) 참고.

있어 명도집행의 위법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차인만으로는 강제집행에 동원되는 수십 명의 철거용역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물리적 공간 점유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공간 점유를 지속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공간은 끊임없는 예외적 성격의 ‘이벤트’가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새로운 건물주에 의한 첫 강제집행이 발생한 2015년 3월 이후 2016년 6월 현재까지 약 130여 차례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30여 회의 공연, 20여 회의 퍼포먼스, 20여 회의 다큐멘터리 및 극영화 상영, 15회의 포럼, 25여 회의 워크숍, 토크쇼, 연극, 마켓 등 다양한 모임 등)과 기존에 진행되던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지속되면서 10여 명의 작가 레지던시가 운영되어 왔다. 개별적인 행사에서부터 여러 주 또는 여러 달에 걸친 행사의 일환으로 공연들이 기획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레지던시 작가들의 작업 과정이나 그 결과를 전시하던 공간 활용을 벗어나 인디음악, 퍼포먼스, 영상물 상영, 포럼 등 공간 활용의 다양성이 극대화된다. 또한 그 주체 역시 기존에 드로잉의 전시 등을 기획하던 디렉터들과 작업한 적이 없던 다양한 그룹들이 연대의 형태로 이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가령 강제집행 한 달 뒤부터 시작된 <한남동 사태를 위한 공연 사이트>는 강제집행 이후 드로잉의 상황을 ‘한남동 사태’로 명명하면서 이 문제에 공감하는 여러 예술가들의 연합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한 달간 운영했다. <대망명>이라는 공연기획에서는 언더그라운드 음악가들이 자생적으로 조직한 일종의 협동조합인 자립음악생산조합이 2015년 11월부터 그 해 말까지 두 달 동안 드로잉 공간에서 영감을 얻어 곡을 만들고 공연을 하며 레코딩도 한 후 그들의 노래로 만들어진 컴필레이션 음반을 제작했는데 드로잉은 이 모든 작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운영원칙은 드로잉 공간 전체에 대한 활용이 전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문화예술가들에 의해 기획되고 운영되었으며, 드로잉과 문화예술가들 간에 공간사용에 대한 대가는 전혀 지불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남포럼’은 다른 명도집행 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드로잉 특유의

저항 방식이었다. 다양한 배경(건축가, 시인, 디자이너, 음악가, 학자, 문화운동가 등의 사람들이 드로잉 공간의 문화적 가치 및 사태의 부당함에 문제제기를 각자의 직업 혹은 전문분야의 언어를 통해 담론을 생성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와 역사 및 그 방향에 대해 발언, 학습, 공유하는 방식의 포럼이 이루어졌다. 포럼은 발표자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음악공연, 퍼포먼스, 영상상영 등 기존의 예술문화공연과 연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한남포럼은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가능할 수 없던 초기에 단발성으로 기획되었지만 2015년 5월 1회 포럼을 시작으로 이후 7월, 10월, 12월(2회), 2016년 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우선 드로잉 운영진들이 그동안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구축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토론자들의 초대 그리고 수차례 강제 집행을 통해 훼손되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모일 수 있었던 카페이자 전시공간이었던 공간의 유지 및 보수를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해왔기에 가능했다.

한남포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각 개인들의 전문 활동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기도 했다. 가령 문화운동을 추구하는 시민연대 활동가는 국회 포럼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을 조직했고, 지리학자와 사회학자는 직접 드로잉에 연구실을 마련하여 드로잉이 위치한 한남동 및 용산 지역의 지역적 맥락과 주변 상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큐멘터리 감독과 사진작가 역시 드로잉을 작업실로 하면서 드로잉 내에서의 문화적 저항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내몰림을 당한 임차상인들의 저항을 기록하는 활동 등을 진행했다.

2) 저항의 가능성과 한계

‘재난’ 이전의 드로잉은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업과 전시 공간으로서 주류 현대미술에 대한 대안적 공간이자 카페라는 소비 공간이 결합된 곳

이었다. 미술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영화에 나왔던 카페에 관심 있던 사람들, 지리적으로 한남동 이태원 대로에 위치한 카페 주변에 거주하거나 자주 들르던 이들이 주로 방문하던 곳이었다. 이곳에서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작품 그리고 벌어질 일들은 어느 정도 예상가능한 일상적 삶의 리듬이 존재하던 공간이다. 물론 이러한 일상적 리듬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카페 레지던시라는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이 투입된 공간의 생산이 있었다. 그러나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러한 일상적 리듬에 균열을 냈고 이곳의 운영과 여기서 작업 활동을 하는 작가 그리고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이 공간은 예측 불가능성의 공간이 되었으며 그 ‘재난성’은 이 공간의 지속성을 지키려는 이들을 재난의 ‘피해자’이자 새로운 공간의 주체로 만들었다. 재난의 비극성에도 그 재난 속에서 서로를 돕는 이들을 통해 발견한 것은 이타주의와 ‘공적 삶과 시민사회에 대한 열망’이었다(Solnit, 2009: 5). 이러한 공적인 삶에 대한 열망은 기존의 지배적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경제적 사유화와 개인주의적 가치에 내몰리던 개인들이 재난을 통해 공적인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됨으로써 오히려 ‘사유화’라는 재난을 어느 정도 지연시킬 것이라는 전망으로까지 나아가게 한다. 드로잉에서 이러한 연대를 행했던 다수의 개인들 간의 연대 역시 이러한 공적인 삶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건물주의 합법적 소유권에 대한 주장은 오히려 드로잉에서 이전에 행해졌던 상대적으로 현대미술에 집중되어 있던 문화예술 활동의 범위를 다양화시켰다. 또한 이윤 창출의 역할을 하던 카페의 상업적 활동은 간헐적으로 중단되거나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던 반면, 주 방문객의 성격을 소비자나 현대미술의 관객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공간의 생산자이자 참여자로 변화시켰다.

공간 소유에 대한 욕망이 빚어낸 갈등이 누군가에게 재난으로 드러난 지점에서 이 재난은 오히려 공간의 해방적 성격을 드러내는 분기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환대’의 공간적 실현과 유사하다. 첫 번째 강제집행 이후 열린 1회 한남포럼은 “환대의 공간 그리고 여정”이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발표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러한 재난의 현장에서 드로잉이라는 공간의 질적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인류학자 김현경은 1회 한남포럼에서 칸트가 주장한 세계시민권의 차원으로서의 환대의 권리를 소유권과 연계해 설명하면서 시민권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적 공간의 지나친 사유화로 인해 시민권이 제한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환대의 권리를 소유권과 연계해 설명한 의도는 소유권을 비판하며 드로잉을 확대해야 할 건물주의 환대를 요청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가 정의한 환대의 권리는 김현경의 지적대로 친교권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시민권에 비해 약한 권리이다(테이크아웃드로잉, 2016: 120). 더군다나 공적 공간이 아닌 사유재산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주에게 자신의 잠재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드로잉을 ‘환대’해달라는 요구는 건물주에게 지나친 ‘각성’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여기서 환대의 주체는 문화예술가 및 운동가들에게 공간을 내어준 드로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데리다는 주인이 손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무조건적 환대’(데리다, 2004: 149)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무조건적인 환대가 불가능한 현실적 조건들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법적인 조건’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실제적인 정책이나 법제화로 실현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정의의 척도로서 요청된다는 것이다.

드로잉은 실제 카페의 모든 공간을 문화예술가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하는 무조건적 환대를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의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카페의 운영자이자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디렉터로서 드로잉의 대표들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공모한 작가들의 일부를 선정해서 공간을 제공한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이후 <모두를 위한 레지던시>라는 프로그램은 이곳을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문화예술가들에게 마찬가지로 작업 공간을 내주었는데 이는 건물주의 소유권을 초월해서 공간의 임차인과 이들의 연대그룹 간의 환대의 문화가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오로지 소유권을 강조하는 건물주만이 배제와 축출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르페브르(1991)가 언급한 공간의 교환가치를 넘어 실제 사용가치의 극대화를 실천한 것으로 기존의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사용 가치와 만남과 교환의 장소로 만든 공간의 점유(appropriation)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명도집행 이후 드로잉을 알게 되고 이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된 예술가들 중에서도 작업 공간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인디뮤지션들의 공연과 음반작업 활동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곳에서 발생한 것을 보면 공간의 사용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한 건물주야말로 공간의 해체를 주도하면서 실제 건물의 임차권을 부정당한 드로잉은 그 공간을 절대적 현대의 공간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소유권 없는 임차인과 그 연대그룹들의 사용가치는 극대화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용가치의 한계다. 2016년 4월 건물주 측은 이 사례를 보도한 보도 프로그램 방영 이후 합의를 다시 제의하면서 4월 말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합의가 성사되었다. 그동안 서로에 대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드로잉 측은 꾸준히 요구했던 건물주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명도집행의 위협이 제거된 상태에서 그나마 영업을 마무리할 몇 개월의 시간을 보장받았다. 성공적인 합의로 대내외에 알려졌고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임차인들 사이에서도 합의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성공적인 합의’의 전제는 2016년 8월 31일까지의 영업을 끝으로 퇴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나름 성공적인 합의에서조차 쫓겨나는 시기와 그 조건의 정도가 합의의 대상이 될 뿐, 대개의 임차인들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장 받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재난의 평등주의 역시 건물주와 임차인의 지위를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심 주요 상권의 임차인 중에는 일반적인 소득 기준에서 본다면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현재의 임대차보호법은 보편적 수준의 임차인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

산보증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영세’상인에 비해 높은 월세를 내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제 모든 임차상인이 건물주의 임의적 결정에 따라 내몰림을 당할 수 있는, 재난을 당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이러한 차등적 보호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건물주에 의해 임차상인들은 월세 규모와 상관없이 재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재난의 평등주의는 임차상인 모두에게는 적용될 수 있지만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차이만큼은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 역시 합법적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임차인의 재난적 상황에 동감하지 못하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한 냉소적 시각은 이들의 저항 자체를 불법적 행위 혹은 억지스러운 것으로 단정 짓는 제2의 가해를 낳는다. 이러한 시각은 드로잉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한 남동이라는 ‘부자 동네’에서 큰 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라면 영세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철거민처럼 운동을 통해 보호해야 할 약자가 아니라는 입장, 또는 건물주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대중이나 언론의 비판 등은 마치 뉴올리언스 주의 카트리나 재해의 피해자들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한 약탈과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방식과 유사하다. 즉, 울리히 벡이 언급한 글로벌 위험 그리고 이로 인한 재난이 그 피해 범위가 과거보다 점점 커지고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계급적 차이를 완전히 넘어서는 재난의 평등주의를 쉽게 말할 수는 없다. 여전히 사회구조적 문제가 위기와 재해의 피해자를 상당 부분 결정짓고 있으며 계급적 요인에 의해서건 다른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건 재난의 당사자 아닌 경우 이를 외부에서 언론을 통해 혹은 계급적·인종적 편견 등에 의해 접할 경우 누구나 재난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테이크아웃드로잉 사례를 통해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도시형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보았다.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 밀려나는 임차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모순, 갈등과 내몰림이 활발한 상업지역에서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면서도 공간적으로 매우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기에 그 문제의 사회적 성격이 잘 드러나는 않는다는 점, 또한 임차인들의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 마치 이것이 계급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닌 사적인 갈등의 문제로, 아니면 합법적인 소유권에 대한 불법적 저항으로 비춰진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구조적 원인에 의한 위협이 개인 그리고 임차인이라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놓인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물리적·정신적 피해로 나타남에도 이를 경제적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도시형 재난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드로잉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도시형 재난으로 공론화시켰다. 드로잉 사례가 기존의 학문적 논의에서 볼 때 글로벌한 수준의 해결 불가능한 위협에 의해 상당한 피해가 유발된 ‘재난’으로 분류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의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서 주요한 공간인 도시의 특유한 ‘재난’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위험사회론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특정 국가나 지역에 기반을 두면서도 글로벌 조건들과 긴밀히 연계된 위협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된 재난의 유형으로서 한국의 도시 특히 21세기 서울에서 상가 임차인들의 내몰림 현상을 도시형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했다. 즉, 기존의 위험사회 연구가 그 원인에 따른 위협의 유형과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면 본고에서는 재난의 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상당한 물리적 피해나 일상적 생활을 위협하는 급격한 변화를 마주하게 된 이들이 왜 그 상황을 ‘재난’으로 의미화하는지를 통해 그 정의의 정당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한 드로잉의 안티-젠트리피케이션 실

천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한계점을 분석했다. 재난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적 저항은 공간의 사용가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형 재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건이 일단락된 뒤에도 드로잉은 ‘재난은 문화예술만이 넘어설 수 있다’는 모토로 사회적 내몰림에 처해 있는 재난의 당사자들과 연대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재난의 공공성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문화 예술 저항의 결과 임대인의 사과와 합의라는 나름의 성과를 얻었으며, 젠트리피케이션과 이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에 사회 관심을 이끌어냈다. 재난을 맞아 만난 많은 이와 함께한 연대와 예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운명공동체를 형성하며 다른 사회와 도시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며 그 가능성의 실천 방안을 상상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 도시가 아닌 소수를 위한 도시를 건설하는 발전주의 도시화 경로의 방향기를 180도 돌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화적 저항이 앞으로 다가올 재난을 예방하는 사회와 국가를 바로 건설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 공동체를 탄생시키고 재난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 대응과 복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화적 저항이 가져온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은 우리가 재난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하고 국가가 재난 대책을 계획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의 관심을 전환시키는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저항하는 드로잉 사태를 레베카 솔닛이 논한 재난의 현장에서 피어나는 혁명적 공동체로 바라보며 기존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에서 간과했던 위험과 재난이라는 관점과의 접점을 찾아보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도시형 재난과 이의 사회적 의미를 좀 더 정교화하고 재난의 현장에서 재난이 가져온 불행을 극복하고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목소리와 활동을 분석해서 충분히 이론화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원고접수일 : 2016년 8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6년 9월 6일

게재확정일 : 2016년 9월 18일

최종원고접수일 : 2016년 9월 20일

❖ Abstract

Urban Disaster and Cultural Resistance:
Anti-Gentrification Movements of Takeout Drawing in Hannam, Seoul

Kim Ji Youn·Lee Seon Young

Gentrification has become a buzzword in recent years as social conflicts between tenants and landlords over Commercial Tenancy Act have expanded. Takeout Drawing, a café and cultural space in Hannam, has emphasized that these are not private problems but social disasters and tried to overcome its disaster through cultural resistance. By addressing the case of Takeout Drawing, this paper discusses the soci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urban disasters, and analyses the contribution and limitation of cultural resistance.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anti-gentrification movements focused on squatting, Takeout Drawing's cultural resistance has emphasized the public context of displacement and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social consensus of urban disaster. The anti-gentrification movement of Takeout Drawing has yielded insights into the gaps between tenants' right and landlords' right, as Takeout Drawing obtained for all its space around its use values against exchange value.

Keywords: Urban Disaster, Cultural Resistance, Gentrification, Takeout Drawing,
Risk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15.02.17. “강남 한복판에 컨테이너가 떠다니는 이유…재건축으로 쫓겨나는 ‘라떼킹’”.
- 김남균·김남주. 2015. 『골목사장 생존법』. 한권의 책.
- 김선필. 2014. 「공유지 복원을 위한 이론적 검토」. 《마르크스주의 연구》, 11(3), 172~201쪽.
- 김지윤. 2016. 「투기적 개발과 공공성: 용산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29~41쪽.
- 노대명. 2000.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에 대한 고찰」. 《공간과 사회》, 14, 36~62쪽.
- 데리다, 자크(Derrida, Jacques). 2004. 『환대에 대하여』. 남수인 옮김. 동문사.
- 문강형준. 2012. 「왜 ‘재난’인가」. 《문화과학》, 72, 19~41쪽.
- 로브 쉴즈·조명래. 2000. 「앙리 르페브르: 일상생활의 철학」. 《공간과 사회》, 14, 10~35쪽.
- 박영국. 2015. 「재난시대, 재난의 망각과 ‘위험에 의한 위험의 생산」. 《진보평론》, 66, 4~18쪽.
- 박영민. 1997. 「르페브르의 실천전략과 사회공간」. 《공간과 사회》, 9, 194~217쪽.
- 박인권·이선영. 2012. 「서울의 저항과 대안의 공간 및 운동 변화 분석」. 《공간과 사회》, 42, 5~51쪽.
- 백, 울리히.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홍성태 옮김. 새물결.
- 신현준. 2016. 「한남동의 창의계급들과 경합하는 장소들의 생산: 세 가지 길의 상이한 행위자들과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이한 유형들」.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1), 33~50쪽.
- 《오마이뉴스》. 2016.07.21. “‘제2의 우장창창 막자’ 더민주 ‘맘상모범’ 발의.”
- 《월간디자인》. 2015. 「테이크아웃드로잉의 활동과 의미」. 6월호. 163~164쪽.
- 이선영. 2016. 「Neil Smith,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한국」. 《공간과 사회》, 26(2), 209~234쪽.
- 이선영·한윤애. 2016. 「예술, 행동주의 그리고 도시: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17~28쪽.
- 테이크아웃드로잉. 2016a. 『한남포럼: 싸이로부터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지키기 위한 대항언어』. 테이크아웃드로잉.
- _____. 2016b. 「드로잉 괴물 정령: 재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재난유산」. 테이크아웃드로잉.
- 《한겨레》. 2016.07.18. 「리쌍 소유 건물 곱창집 ‘우장창창’ 강제퇴거 완료」.

- 한국감정원. 2015.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 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 황인철·유남영. 1989. 「정책대안의 모색-빈민들의 주거형편에 대한 법적 지위」. 김형국. 『불량촌과 재개발』, 나남, 309~351쪽.
- 황진태. 2016. 「동아시아 맥락에서 바라본 한국에서의 위험경관의 생산」. 《대한지리학회지》, 51(2), 283~303쪽.
- Gregory, S. and Hartman, C. W. 2006. *There is No Such Thing as a Natural Disaster: Race, Class, and Hurricane Katrina*. New York: Taylor & Francis.
- Ha, S-K. 2002. "The urban poor, rental accommodations, and housing policy in Korea." *Cities*. 19, pp. 195~203.
- Kim, H. H. 1998. "South Korea: Experiences of Eviction in Seoul." In Azuela, A., Duhau, E. & Ortiz, E. (eds) *Evictions and the right to housing: experience from canada, Chile, the Dominican Republic, South Africa, and South Korea*.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London: Wiley.
- Pelling, M. 2012. *The Vulnerability of Cities: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Resilience*. London. Taylor & Francis.
- Pruijt, H. 2013. "The logic of urban squat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1), pp. 19~45.
- Shin, H. B. and Kim, S. H. 2016. "The developmental state, speculative urbanisation and the politics of displacement in gentrifying Seoul." *Urban Studies*, 53(3), pp. 540~549.
- Smith, N. 2006. *There's No Such Thing as a Natural Disaster*. Published on: Jun 11, 2006 <http://understandingkatrina.ssrc.org/Smith/> 2016.07.31. 접속.
- Solnit, R. 2009. *A Paradise Built in Hell: The Extraordinary Communities that Arise in Disasters*. New York: Viking.